

유럽부흥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0항 관련)

연번	납입대상	납입금액
1	유럽부흥개발은행에 출자	6천500만 유럽통화단위
2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협력기금에 출연	30만 미합중국달러
3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협력기금에 출연	30만 미합중국달러
4	유럽부흥개발은행에 출자	6천500만 유럽통화단위
5	유럽부흥개발은행에 출자	7천만 유럽통화단위
6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150만 미합중국달러
7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53억원
8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 출연	13억원
9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43억500만원
10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 출연	12억3천만원
11	유럽부흥개발은행에 출자	1억14만 유로(1천10만 유로는 납입자본이며,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
12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34억5천만원
13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 출연	11억5천만원
14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34억5천만원
15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 출연	11억5천만원
16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33억9천만원
17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 출연	11억3천만원
18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33억6천만원
19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 출연	11억2천만원
20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30억9천만원
21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 출연	10억3천만원
22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	300만 미합중국달러

	연	
23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 기금에 출연	100만 미합중국달러
24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25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 기금에 출연	100만 미합중국달러
26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27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 기금에 출연	100만 미합중국달러
28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29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 기금에 출연	100만 미합중국달러
30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31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 기금에 출연	100만 미합중국달러
32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100만 미합중국달러
33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 기금에 출연	100만 미합중국달러
34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및 인턴 파견프로그램에 출연	130만 미합중국달러
35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100만 미합중국달러
36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 기금에 출연	100만 미합중국달러
37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및 인턴 파견프로그램에 출연	140만 미합중국달러
38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224만 미합중국달러
39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지속가능인프라기금에 출연	94만 미합중국달러
40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및 인턴 파견프로그램에 출연	123만 미합중국달러
41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144만 미합중국달러
42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후행동특별기금에 출연	200만 미합중국달러
43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및 인턴 파견프로그램에 출연	134만 미합중국달러
44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재난대응특별기금에 출연	5천만 미합중국달러
45	유럽부흥개발은행에 출자	4천34만 유로

46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47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지속가능인프라기금에 출연	100만 미합중국달러
48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후행동특별기금에 출연	100만 미합중국달러
49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및 인턴 파견프로그램에 출연	131만 미합중국달러
50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200만 미합중국달러
51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후행동특별기금에 출연	150만 미합중국달러
52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및 인턴 파견프로그램에 출연	120만 미합중국달러

비고

1. "연번"이란 대통령령 제13306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이 영 개정예 따라 유럽부흥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 순서를 말한다.
2. "납입금액"이란 유럽부흥개발은행에 대해 종전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 외에 이 영 개정예 따라 신규로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을 말한다.